

의안번호	2204920
의 퇴 인	이만희의원
회 답 일	2024. 11. 25
추 계 번호	24B452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5,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7억 7,000만원(연평균 7억 5,400만원)으로 추계됨

○ 국비 및 지방비: 각 18억 8,500만원(연평균 각 3억 7,700만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안 제12조제1항)	754	754	754	754	754	3,770	754
국비	377	377	377	377	377	1,885	377
지방비	377	377	377	377	377	1,885	377

주: 1. 시·도 단위의 후계농어업인단체에 운영경비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2. 본 추계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제1항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u>후계농어업인단체</u> 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u>운영경비와 시설비</u> ,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2	안 제12조의2 신설(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u>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u> 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12조의3 신설(조세감면 등)	정부는 <u>후계농어업인 단체</u>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조세를 감면함</u> (제1항)	의무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u>후계농어업인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u> 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과세특례를 적용함</u> (제2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2조제1항(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2	안 제12조의2 신설(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수입감소)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국·공유시설 무상 사용, 조세감면 등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감소가 발생하나, 현시점에서는 무상사용하게 될 국·공유시설의 임차료 또는 대여료, 조세감면 대상 세목 및 감면금액 등의 예측이 불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3	안 제12조의3 신설(조세감면 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비용추계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계농어업인단체 운영경비등으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안 제12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후계 및 청년 농어업인 관련 단체는 다음과 같으며, 문화학술대회 및 교육비용 등 지원중
 - (후계농어업인)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이고,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 (후계농어업인단체)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 [참고자료 1] 후계·청년 농업인 및 어업인 지원사업 현황 참고
 - ※ [참고자료 2] 농촌진흥청의 청소년·농업인·관련단체 육성사업 현황 참고

[표 2] 후계 및 청년 농어업인 관련 단체 현황

	단체명	현황	비고
농업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1중앙회 (회원수: 약 14만명('24년)) - 17개 시·도연합회 - 167개 시·군·구연합회 - 1,500여 읍·면·회	법인명칭 변경 ('22.7.)
어업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1중앙회 (회원수: 약 3만 1천명('22년)) - 12개 도 연합회 - 70개 시·군연합회	

자료: 1.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홈페이지
 2.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홈페이지

□ 본 추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단위¹⁾의 후계농어업인단체에 운영경비, 시설비 등(이하 “운영경비등”이라 함)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후계농어업인단체’는 중앙회를 기준으로 시·도 단체, 시·군·구 단체, 읍·면·동 단체 등 하부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시·군·구 및 읍·면·동 등 하부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규모 및 사례를 구체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시·도 후계농어업인단체에 지원하는 운영경비등은 농촌진흥청이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²⁾에 따라 9개 지역(도) 4-H본부에 지원했던 교육지원비용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 농촌진흥청은 2022~2023년, ‘한국 4-H 도 본부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9개³⁾ 4-H 도 본부에 총 2억 3,400만원(도 본부 1개소당 약 2,600만원) 지원
 - －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 : 50
- ※ [참고자료 3] 농업전문인력양성: 한국 4-H 도 본부 교육지원 참고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개 시·도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매년 2,6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 수 및 운영경비등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 이때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 : 50으로 가정(국비 및 지방비 각 1,300만원)

[표 3] 시·도 단위의 후계농어업인단체 현황

단체	시·도 단체 수	비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7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12개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 개정안에 따른 ‘후계농어업인단체’는 중앙회를 기준으로 시·도 단체, 시·군·구 단체, 읍·면·동단체 등 하부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시·군·구 및 읍·면·동 등 하부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규모 및 사례를 구체화하기 곤란
- 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경비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3) 9개 4-H 도 본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추계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경비등을 지원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7억 7,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후계농어업인단체 운영경비등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후계농업인단체 수(A, 개)	17	17	17	17	17	—
후계어업인단체 수(B, 개)	12	12	12	12	12	—
운영경비등 지원단가(C, 백만원/개)	26	26	26	26	26	—
운영경비등 지원금액 ($D=(A+B) \times C$, 백만원)	754	754	754	754	754	3,770
국비($D \times 50\%$)	377	377	377	377	377	1,885
지방비($D \times 50\%$)	377	377	377	377	377	1,885

주: 시·도 단위의 후계농어업인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후계·청년 농업인 및 어업인 지원사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후계·청년 농어업인 지원 관련 사업별 예산 현황: 2022~2025년(안)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	사업내용	2022	2023	2024	2025(안)
농림 축산 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안정적인 영농 초기 정착을 위해 정착 지원금 등을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	38,899	55,106	95,724	113,66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차보전)	농지 구입·시설 설치 등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20,058	51,363	68,870	87,143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유자)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농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하여 청년농들에게 농지 매도·임대 지원	812,314	857,726	1,241,260	1,094,870
	청년농촌보급자리단지	귀농·귀촌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800	4,800	15,200	30,800
	경영실습임대농장	지방자치단체 자체 부지 또는 농어촌공사 비축농지를 활용하여 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하여 청년농에게 임대	4,500	5,101	—	—
	청년귀농 장기교육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중심의 장기체류형 귀농교육 지원	1,205	1,547	1,547	1,547
	스마트팜 청년보육센터	스마트팜 취·창업을 원하는 청년(만18~39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위주의 장기(20개월) 보육프로그램 운영	8,000	8,000	8,000	8,000
	임대형 스마트팜	지자체 등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임대	41,000	64,500	37,000	40,600
해양 수산부	청년기업 성장펀드	1차 농산업 또는 농축산물 가공·유통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중사 청년기업 대상 투자	9,000 (모태펀드 출자)	13,500 (모태펀드 출자)	33,600 (모태펀드 출자)	33,600 (모태펀드 출자)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수산분야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발굴하여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자금지원	10,843	10,136	17,858	17,055
	수산업경영인 교육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226	226	226	226
	수산계고교 특성화지원	수산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종합승선실습, 현장실습, 국제교류 학습 및 교육실습 장비 등 지원	2,859	2,651	2,776	2,776
	수산계고교 장학금	수산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산계열 학교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133	133	폐지	폐지
	수산계고교 공동 실습선 건조	실습생 안전확보, 교육여건 개선 및 수산후계 인력 양성을 위해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1척 건조	500	6,200	5,700	8,600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온·오프라인으로 구인자-구직자를 연결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분야 인력난 해소 및 취업률 제고	407	417	378	343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청년어업인 대상 어촌정착금 지원 (최대 월110만원, 최장 3년)	1,712	1,926	2,527	6,07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후계·청년 농업인 및 어업인 관련단체 지원현황: 2022~2025년(안)

(단위: 백만원)

부처	지원단체명(사업명)	단체소개 및 지원현황	2022	2023	2024	2025(안)
농림 축산 식품부 ¹⁾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인교류센터지원)	• (단체소개) 전국 후계농업경영인들이 협동하여 조직한 자주적인 단체 • (사업내용) 민원상담(현장·전화·온라인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작·방송 등	500	500	500	500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후계농업경영인문화학술대회지원)	• (단체소개) 전국 후계농업경영인들이 협동하여 조직한 자주적인 단체 • (사업내용) 후계농업경영인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문화학술대회 등 지원	195	195	195	195
해양 수산부	한국수산경영학회	• 수산경영 전반에 관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 및 보급, 수산정책 수립에 대한 건의, 회원 상호간의 협력 편의 도모 • 수산경영학회 학술대회 개최, 어업인 현장 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 지원	12	9	9	9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영어기술 과학화, 경영 합리화, 유통 선진화, 권익신장과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통한 복지어촌 건설에 기여 • 수산업경영 능력 배양 교육, 해외 연수	132	135	110	110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 해양수산분야 신지식인 회원 상호간 정보와 기술 공유, 어업인 현장기술 교육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 진행	120	120	115	115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 여성어업인 상호연대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통한 어촌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기여	53	53	41	41
	수협중앙회	•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 및 수산가공업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	71	71	49	49

주: 1) 단체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농식품부 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 지원으로 작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농촌진흥청의 청소년·농업인·관련단체 육성사업 현황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청소년 육성사업>

□ (사)한국4-H본부

- (개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법률 제16993호)」에 의한 한국4-H활동 주관단체
- (조직·회원수) 17개회, 11,574명 * 설립: 1954년, 2001년 개칭(4-H본부)
 - 대의원: 178명(시·도·군4-H본부 대표, 4-H단체 대표, 후원회원 등)
 - 지원단체: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4-H지도교사협의회, 한국4-H국제교류협회
- 중앙조직·대표
 - 임원: 29명(회장 1, 부회장 3, 이사 23, 감사 2) * 임기 3년(단임 1회)
 - 직원: 9명(사무부총장 1, 부장 2, 직원 6)
- (대표성과) 청소년·대학 4-H 육성

연도	주요내용
2021	제3회 청년 미래비전토론회, 제15회 전국 학생4-H 과제경진대회(1회, 326명), 전국 학생 모의 국회(440명), 핵심4-H청소년 리더십 육성(6회, 377명), 원예치유 프로젝트 ‘콩심팔심’(1회, 3,264명), 학교4-H 활동프로그램 가이드북 제작·보급(3,000부), ‘쓰담 딸리기’ 릴레이 환경 캠페인, 어린이 농부 스마트 교육(10개교, 216명)
2022	전국 학생 모의국회(117명), 핵심4-H청소년 리더십 육성(3회, 161명), 대학4-H 리더십 교육(3회, 161명), 스마트 농기계 경진(5팀), 전국 학생4-H 과제경진대회(664명), 청소년 진로 나침반캠프(8회, 304명), 디지털 농업 코딩교육(277명), 청소년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61명)
2023	전국 학생 모의국회(191명), 전국 학생4-H 과제경진대회(458명), 4-H청소년 리더십 육성(98명), 전국학생4-H연합회 리더십캠프(98명), 대학4-H 리더십 교육(4회, 195명), 제16회, 청소년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7회, 217명)

- 최근 5년간(2021~2025년(안))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안)
한국4-H본부(청소년)	524(462)	682(572)	682(572)	—	—
지자체	260	260	260	—	—

주: '24년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농촌진흥청 단체예산 미반영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 (사)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조직·회원수) 1,858개회, 85,836명
 - * 설립: 1947년
 - * 중앙 1, 도·특광역시 17, 시군연합회 194, 읍면동회 1,646
- (임원) 26명(회장 1, 부회장 5, 이사 17, 감사 3)
 - * 임기 3년(연임 1회)
- (직원) 20명(사무국 7, 농업인신문 13)
- (주요기능) 지역농업의 선도인력인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 제고를 통한 농업 신기술 실천·확산 및 경쟁력 향상, 농업 신기술 실천 확산, FTA 대응 경쟁력 강화, 농업인 권익 증진 등

□ (사)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 (조직·회원수) 1,783개회, 78,032명
 - * 설립: 1958년
 - * 중앙 1, 도·특광역시 17, 시군연합회 171, 읍면동회 1,594
- (임원) 22명(회장 1, 부회장 3, 감사 1, 이사 17)
 - * 임기 2년(연임 1회)
- (직원) 14명(사무국 3, 농촌여성신문 11)
- (주요기능) 농촌여성의 잠재 인적 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리더 육성, 여성농업인 전문역량강화, 경영·마케팅능력 함양, 도농교류사업, 전통기술 전승, 다문화 가정 멘토링 등

□ 한국4-H중앙연합회

- (조직·회원수) 1,301회, 37,573명
 - * 설립: 1947년, 1981년 한국4-H연합회 결성
 - * 청년농업인 149회(8,656명), 대학 27회(1,766명), 학생 1,125회(27,151명)
- (임원) 43명
 - * 임기 2년(연임 1회)
 - * 중앙 6(회장 1, 직전회장 1, 부회장 2, 감사 2), 사무국 등 37명
- (주요기능) 국제교류사업 및 교육훈련, 도·농교류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하여 농업·농촌 선도 우수 후계인력 육성, 농업인 교육훈련(농심함양, 영농

기술교육, 지도력 배양 등),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분야 국제교류, 농촌 환경 가꾸기 등

□ 최근 5년(2021~2025년(안)) 예산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역	2021	2022	2023	2024	2025(안)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업전문인력양성 (2431-300) -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 선도농업인 육성지원	303	303	303	-	-
		- 농촌지도자 조직혁신 및 활성화	51	52	28	-	-
		- 미래과제 발굴 및 정책조사연구	30	17	31	-	-
		- 농촌지도자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	216	184	207	-	-
		- 농업·농촌 공익가치 홍보	7	49	37	-	-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농업전문인력양성 (2431-300) -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	212	212	212	-	-
		- 유형별 회원 역량강화 교육	80	80	90	-	-
		- 영농기술정보제공 및 활동홍보	16	16	55	-	-
		- 개도국 여성농업인 생활개선과제 전수 등	35	35	25	-	-
		-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농업활동지원	21	21	-	-	-
		-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멘토링 및 가족경영협약 교육	50	50	42	-	-
		-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지원사업 평가회	10	10	-	-	-
한국4-H본부	농업전문인력양성 (2431-300) -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 후계인력 육성지원	524	682	682	-	-
		- 4-H회원 지도자 교육 및 연수	330	376	377	-	-
		- 4-H청년농업인 육성	62	110	110	-	-
		- 4-H국제교류활동	2	60	70	-	-
		- 4-H청소년 활동정보지 발간	50	50	50	-	-
		- 4-H회원모집 포스터 제작	11	11	11	-	-
		- 4-H프로그램 연구개발	22	8	7	-	-
		- 4-H정보화 지원	30	30	30	-	-
		- 4-H성과 연차보고서 제작	15	15	15	-	-
		- 국고보조사업 회계검증	2	2	2	-	-
		- 4-H활동 지도매뉴얼 보급	-	20	10	-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참고자료 3] 농업전문인력양성: 한국 4-H 도 본부 교육지원4)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 목적

- 지역 4-H본부 교육활동 지원으로 우수 농업인력 양성과 지역 본부의 역량 향상을 통해 4-H운동의 체계적인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도 본부 교육 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 지역4-H운동 활성화
- 중앙과 지역간 교육운영의 연계추진으로 효율적인 성과 거양

□ 사업량: 9개소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9	1	1	1	1	1	1	1	1	1

□ 사업 규모

- 사업비: 23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규모: 개소당 26백만원
- 지원기준: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도 4-H본부에 우선 배정
 - * 도 여건에 따라 시군 배정 가능
- 편성과목: 사업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편성
 - 민간경상보조,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타 수당, 수용비, 보상금, 임차료, 재료비, 필요시 참가자 급식비 등
 - ※ 민간경상보조 운영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연계 필수

□ 사업 대상

- 도 농업기술원

4) 농촌진흥청, 「2023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2022.12.,
농촌진흥청, 「2022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2021.12.